



농정포커스

제90호(2014. 8. 4.)

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

박준기 김미복

KREI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제90호(2014. 8. 4.)

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

박준기 김미복



1. 농어촌특별세의 특성과 문제점	1
2. 농식품재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위치	3
3. 농어촌특별세 운용상의 주요 쟁점	5
4. 농어촌특별세 운용 효율화 방향	10

감 수	박성재	선임연구위원	02-3299-4238	seongjae@krei.re.kr
내용 문의	박준기	연구위원	02-3299-4173	jkpark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	선임전문원	02-3299-4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I 농정포커스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요 약

- 농어촌특별세(이하 농특세)는 UR 협상 타결과 WTO 출범으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어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한시적 목적세로 1994년 도입됨
- 농특세는 당초 1994~2004년까지 10년의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하였으나 정부가 무역정책방향을 FTA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·농촌부문의 피해 최소화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24년 6월까지 연장
- 농특세가 농식품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0.4%까지 높아져 일반회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운용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
- 농특세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
 -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(稅收) 규모가 불안정적임
 - 농특세사업과 일반회계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목적세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
 - 세수(稅收) 부족에 따른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
- 농특세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
 - 첫째, 농특세 세입원을 단순화하고, 안정성 높은 세입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
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세율을 낮추고, 조세저항이 적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, 취득세 인하 대안으로 담배소비세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
 - 둘째, 농식품 정책사업군을 재설정하고, 농특세 재원은 '농어업인 복지 증진'에 집중하여 목적세로서 역할 부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
 - 셋째, 농특세는 농식품재정의 30%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므로 농특세 사업 규모와 세수(稅收) 간 일치성 확보를 위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함

1. 농어촌특별세의 특성과 문제점

- 농어촌특별세(이하 농특세)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·농어업인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
 - 농특세는 UR 협상 타결과 WTO 출범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시적 목적세로 1994년 도입됨
 - UR 협상이 타결되고,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정방향도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‘개방농정’으로 전환됨.
 -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구조조정이 요구됨
 - 한편, 농업 내부적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, 영농규모의 영세성, 자본부족 등으로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개방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
 -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농업·농촌을 둘러싼 국내 정치·경제적 상황이 불안해짐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음
 - 특히,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국토의 자연자원 및 환경 보전,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농업부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
 - 정부는 UR 협상의 조기 타결로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 시행 중이던 42조 원 투융자계획에 더하여 추가적인 재원투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목적세 형태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함
 - 새로운 세금 신설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넓은 세원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
 - 신농정계획 목표 연도를 2년 앞당겨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함

“

농어촌특별세는
농산물 시장
개방시대를 맞이하여
농어업 경쟁력
강화와 농어촌
복리증진을 위하여
한시적으로 도입된
목적세

”

“

농특세 세입원의
높은 변동성,
목적세로서 차별성
부족, 예산 대비
세수(稅收) 부족에
따른 연례적
사업이월 등 운용상
문제 발생

”

□ 농특세는 일몰적 성격의 목적세로 2차에 걸쳐 기한 연장

- 농특세는 일몰적 성격의 조세로 당초 1994~2004년까지 한시적 운영
기로 하였으나 한·칠레 FTA 등 무역정책 방향을 개방 속도 가속으로
전환하면서 이에 대응한 농업·농촌 투융자 확대의 필요성 제기로
2014년 6월 말까지 1차 연장되었음
- 미국, EU와의 FTA 발효는 물론, 최근 캐나다,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
FTA 협상 타결, 한·중 FTA 협상 진행, 쌀 관세화 가능성 등 지속적인
시장개방 계획이 발표되면서 무역이득공유제(가칭) 등 농업·농촌에
대한 다양한 형태의 투융자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- 계속되는 추가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
'2013 세계개혁안(2013. 8. 8.)'에서 농특세 10년 추가 연장계획을 발
표(2차 기한 연장)함으로써 농특세를 통한 자원 확보 중단의 우려를
불식시킴
- 농특세 기한 만료(2014. 6.)에 대비한 농식품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제
기되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10년 추가 연장계획을 발표한 것은 크
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첫째, 농특세 폐지 시 일반회계에서 추가 자원 확보의 한계임. 농특세 도
입 당시에는 42조 원 구조개선사업 자원 외에 추가 자원이었으나 최근
세출 측면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하게 운용되어 목적세로서의 부담
감이 줄어들
 - 둘째, 선제적으로 기한을 추가 연장함으로써 무역이득공유제 등 시장개
방화에 따른 농업부문 추가 자원 지원 논의를 사전에 차단함

□ 농특세 운용상의 문제점

- 농식품재정에서 농특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
 - 농식품 재정에서 농특세 재원 비중
: 19.7%(1995) → 23.7%(2010) → 30.4%(2012)

- 반면, 농특세의 세입 및 세출의 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
 - 첫째,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(稅收) 규모가 불안정적임
 - 둘째, 세출 측면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농특세 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목적세로서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
 - 셋째, 농특세의 성격상 국세이므로 세입원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예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농특세를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세수(稅收) 부족으로 연례적인 사업이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

2. 농식품재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위치

□ 농어촌특별세 의존 비중이 높은 농식품재정 구조

- UR 이후 3기에 걸친 농림부문 투융자계획(42조 원(1992~1998), 45조 원(1999~2002), 119조 원(2003~2013))에서 농특세는 1기 42조 원 계획 외의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으로 도입됨
 - 42조 투융자계획의 조기 완료(2002→1998)와 함께 추가 재원으로 10년간 15조 원 재원 확보를 목표로 농특세가 도입됨
 - 도입 당시 농특세는 일반재원 외 추가 재원이었으나 45조 계획부터는 전체 투융자예산 세입에 농특세도 포함되었음

“
농식품재정에서
농특세 재원이
차지하는 비중은
지속적으로 높아져
왔으며,
이 과정에서
농특세가 일반회계
성격의 재원으로
변경
”

그림 1. UR 이후 농림업투융자사업 계획

'92	'93	'94	...	'98	'99	'03	'04	'13	'14
1단계: 42조 계획 (국고 35조, 지방비·자부담 7조)				2단계: 45조 계획 (국고 38조, 지방비·자부담 7조)				3단계: 119조 계획 (국고 보조, 지방비·자부담 제외)			

주: 농특세의 추가 기한연장 조치로 2024년 6월까지 유지될 예정임.

“
 세출 측면에서
 농특세사업과
 일반회계사업 간
 차별성이 낮아
 운용 방식도
 ‘특별회계’에서
 ‘관리계정’으로 전환

”

- 농특세가 농림수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.4% (2.6조 원)에서 2010년 23.7%(4.1조 원), 2012년에는 30.4%(5.5조 원)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
- 농특세는 세출 측면에서 별도의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, 전체 농어촌투융자사업 재원 중 일부로 운용됨에 따라 목적세임에도 농특세 사업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·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농특세가 세출 측면에서 목적세로서의 특성이 흐려짐으로써 재정전문가로부터 목적세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됨

표 1. 농림어업 총지출에서 농특세의 비중

단위: 조 원, %

구 분	1995	2005	2007	2010	2011	2012
농림어업 총지출 규모	7.6	14.1	15.9	17.3	17.6	18.1
농어촌특별세	1.5	2.6	3.3	4.1	4.2	5.5
비 중(%)	19.7	18.4	20.8	23.7	23.9	30.4

주: 농림수산 총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산한 금액이며, 농특세액은 예산액임.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예산.

□ 농특세 운용방식이 ‘특별회계’에서 ‘관리계정’으로 전환

- 농특세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‘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’로 관리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‘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’ 내의 ‘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’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음
 - 특별회계(special account)는 국가가 특정 사업 운영, 특정 자금 보유·운영 혹은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·운영함
- 특별회계방식에서 사업계정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세출 측면에서 농특세사업과 일반세출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임

3. 농어촌특별세 운용상의 주요 쟁점

□ 세입원이 경기에 민감하여 세수(稅收)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

- 농특세의 특성은 과세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며, 용도 측면에서는 UR 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어촌경쟁력강화 목적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이고, 조세 부과 측면에서는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임
- 농특세 세입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살펴보면, 세입원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, 기존 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이므로 세수(稅收)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

표 2.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

과 세 표 준	1994	2005	2013
비과세 감면세액 (내국세, 지방세, 관세)	20%	20%	20%
저축이자, 배당소득 감면세액	10%	10%	10%
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중 5억 원 초과분	2%	2%	삭제
특별소비세액 (개별소비세액)	골프장 30%, 그 외 10%	골프장 30%, 그 외 10%	골프장 30%, 그 외 10%
증권거래세액	0.15%	0.15%	0.15%
취득세액	10%	10%	10%
경주·마권세액	20%	레저세액으로 통합	
레저세액	-	20%	20%
종합토지세액	세액 500만 원 초과 10%, 1천만 원 초과 15%	종합부동산세액으로 통합	
종합부동산세액	-	20%	20%

“
농특세 세입원이
경기변동에 민감하여
세수(稅收) 규모의
변동성을 높이는
결과 초래

”

“
증권거래세,
종합부동산세,
취득세 등
비중 높은
세입원들의
변동성이
높게 나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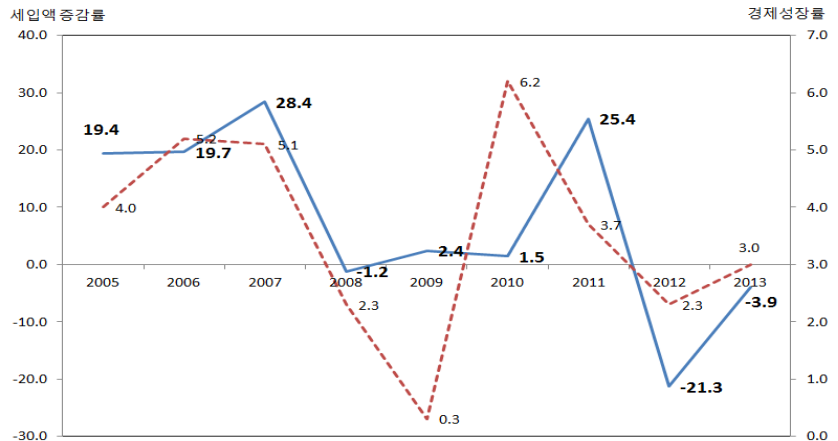
- 세입원별 변동성 분석(변이계수) 결과, 증권거래세, 종합부동산세, 취득세 등 비중이 큰 세입원들의 변이계수가 30.0을 초과하여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
- 이는 농특세 세입원이 경기변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(세수(稅收) 증감율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계수는 0.48임)
- 경제성장률과 농특세 세수(稅收) 증감율 비교 결과, 경제성장률과 세수(稅收) 증감율 간 상관관계가 높는데, 특히 세계금융위기(2008년)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최근에 농특세 세수(稅收) 증감율 변화가 커서 안정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

표 3.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변동성

구 분	평 균 (백만 원)	표준편차	변이계수
비과세 감면세액	88,391	7,045	8.0
소득감면세액 (저축이자, 배당소득)	71,067	21,534	30.0
법 인 세	499,150	108,187	22.0
개별소비세	40,313	12,510	31.0
증권거래세	1,695,311	523,260	31.0
종합부동산세	276,923	134,849	49.0
취 득 세	797,704	262,698	33.0
레 저 세	182,142	33,155	18.0
전 체	3,651,003	848,395	23.0

주: 취득세와 레저세는 지방세정연감 참고 추정치임.

그림 2. 농어촌특별세 세수(稅收)와 경제성장률의 관계



주: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.4799로 나타남.

□ 농특세 세수(稅收) 부족으로 사업이월의 악순환 발생

- 2004년 이후 농특세 예산액보다 세수(稅收)가 많았던 해는 4개년도, 세수(稅收)이 부족했던 해는 5개년도로 세수(稅收) 부족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해가 더 많았음
- 특히 2009년 이후에는 2011년을 제외한 4개년 간 세수(稅收)가 부족하였는데, 2012년, 2013년에는 1조 6,826억 원, 9,735억 원으로 세입부족액이 예산액의 각각 30.4%, 21.7%나 되었음
- 농어촌특별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최근 발생한 농어촌특별세 세수부족 등으로 사업이월을 반복
 - 세입 자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규모가 2009년 993억 원에서 2012년 7,904억 원으로 확대

“

농특세 예산액 대비 세수(稅收) 부족에 따른 사업이월 현상의 연례적 반복으로 원활한 농식품재정사업 추진에 한계

”

표 4. 농특세 예산액과 세수(稅收) 비교

구 분	예산액 (A)	세수 (B)	차이 (B-A)	세수 증감율	경제 성장률
2004	21,813	20,711	-1,102	-	-
2005	26,470	24,729	-1,741	19.4	4.0
2006	27,345	29,596	2,251	19.7	5.2
2007	32,922	38,009	5,087	28.4	5.1
2008	36,360	37,549	1,189	-1.2	2.3
2009	40,190	38,459	-1,731	2.4	0.3
2010	41,031	39,019	-2,012	1.5	6.2
2011	42,240	48,948	6,708	25.4	3.7
2012	55,339	38,513	-16,826	-21.3	2.3
2013	44,735	37,000(p)	-9,735	-3.9	3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Ⅱ」, p.124 참조.

표 5.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추이

단위: 억 원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2009	77,584	72,257	1,684 (993)	3,643
2010	88,901	79,400	8,427(5,619)	1,074
2011	91,512	85,260	6,107(5,426)	145
2012	132,584	92,662	31,381(7,904)	8,541

주 1)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예산결정 후 증감액을 감안한 금액임.
 2) 이월액 중 괄호 안은 사업비 기준 세입자원 없는 세출 이월액임.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Ⅱ」, p.129 참조.

“
 세출 측면에서
 농특세사업과
 일반회계사업 간
 차별성이 낮아
 목적세로서 역할이
 부족하다는 비판
 제기

- 예산액 대비 세수(稅收)의 부족 원인으로는
 - 첫째, 농특세 세입원의 특성상 과세 대상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, 조세 부과 여건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세수(稅收)가 감소
 - 둘째, 조세·재정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당년도 조세 여건만을 고려하여 농특세 예산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실제 농특세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요예산과 괴리 현상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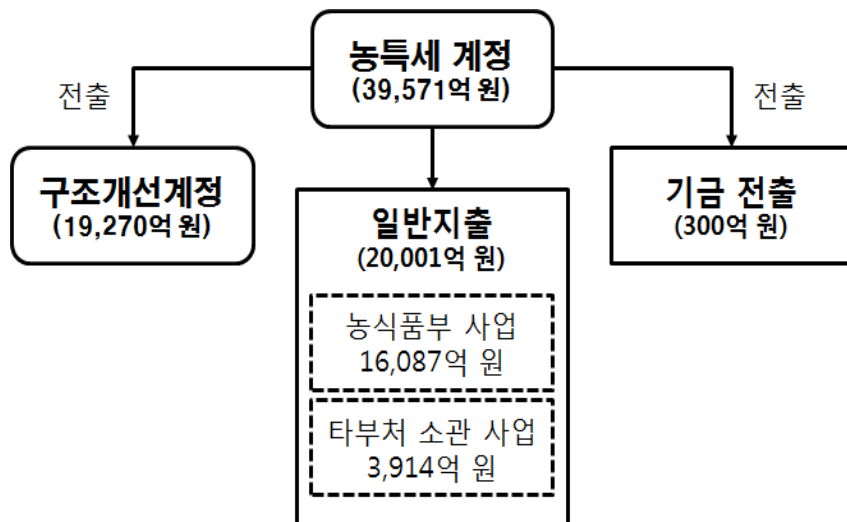
□ 농특세사업과 일반회계사업 간 차별성 부족

- 목적세인 농특세 재원사업이 실제 추진에서는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이 어렵고, 일반 농림투융자 방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농특세가 목적세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원인이 됨
 - 2012년 농특세 세출흐름을 보면, 48.7%가 구조개선계정으로 전출되며, 나머지 재원도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추진에 활용됨

표 6. 농특세 회계 운영방식의 변경

구 분	1995~2006	2007~2012
회계운영	농특세관리특별회계	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
집행	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 (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)	농특세사업계정 (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)

그림 3. 농특세 세출 흐름도(2012년 결산기준)



자료: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, 「2012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」 시스템자료에서 재구성.

□ 타부처의 농특세 자원 활용 비중은 낮아

- 도입 당시 우려되었던 다양한 부처가 농특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문제는 최근으로 올수록 타 부처 및 청의 사업 비중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슈에서 제외됨
 - 총세출액 대비 타부처 및 청의 세출액 비중(%)
 - : 10.3(1995) → 14.3(2000) → 4.3(2006) → 2.0(2012)
- 타 부처(청)의 세출액 규모가 축소된 것은 분산 추진되었던 농업·농촌 관련 정부 사업이 점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되었음을 의미함
 - 다른 한편으로는 농특세 자원의 성격이 일반회계 자원과 유사해짐에 따른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음
- 농특별세 사업계정의 타 부처(청)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, 2012년 소방방재청과 환경부 세출액은 각각 2,269억 원, 1,035억 원, 보건복지부는 602억 원이었음

“
농특세 자원 중
타 부처 활용
비중 낮고,
농어촌에 필요한
사업에 활용

표 7.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타부처 및 청의 소관사업 내역

단위: 억 원, %

구 분	2011년	2012년	증감율
■ 보건복지부	672	602	-10.4
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(농특)	19	19	0.0
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비용자(농특)	59	10	-82.9
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(농특)	589	568	-3.6
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(농특)	5	5	0.0
■ 환경부	909	1,035	13.8
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	825	955	15.7
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	84	80	-5.0
■ 노동부	9	9	-5.0
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	9	9	-5.0
■ 소방방재청	2,072	2,269	9.5
소하천정비(보조)	2,072	2,269	9.5
합 계	3,662	3,914	6.9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부처별 세출예산현황.

“

농특세 운용의
효율화를 위해서는
안정성 높은 세입원
발굴로 세수(稅收)
변동성을 완화해야

”

4. 농어촌특별세 운용 효율화 방향

□ 농특세 세입원의 단순화와 안정성 높은 세입원 발굴

- 농특세는 부과세로서 세입원이 다양하고,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예산 대비 세수(稅收) 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변동성이 큰 세입원을 최소화하고, 세입원도 단순화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성 제고 필요
- 변동성이 큰 세입원의 의존도를 낮추고, 조세 거부감이 낮은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입원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-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,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음
- 최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향후 농특세 세입원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, 세입규모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
 - 농림사업의 특성상 상당 비중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

□ 농식품 정책사업군 재설정과 농특세 사업범위의 명확화

- 농특세 도입 목적은 농식품재정 사업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목적세로서 농특세가 세입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갖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모호하다는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음
 - 농특세 도입 및 운용 목적은 “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
- 농특세의 도입 목적과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은 있지만, 목적세로서 농특세의 위치를 명확할 필요가 있음
 - 농식품재정의 정책군을 ‘농업경쟁력 제고’, ‘농업인 복지 증진’, ‘농촌개발’ 등 세 분야로 정책군을 구분하고, 농특세 도입 목적에 맞는 정책군에 집중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

- 일반회계 재원 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, 농특세는 농업·농촌의 복지 증진과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‘농업인 복지’ 정책부문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- 농업·농촌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은 물론,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소득증대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
□ 농특세사업 예산과 세수(稅收) 간 일치성 확보 위한 조정기능 강화

- 농식품재정에서 농특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% 수준으로 핵심 재원이지만 농특세의 특성상 기획재정부가 세수(稅收)를 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
- 그 결과,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예산과 세수(稅收) 간 격차가 발생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수(稅收) 부족 등으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,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
- 조세 측면의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되, 사업 추진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체계적으로 조정·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예산과 세수(稅收) 간 일치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
 - 농식품재정에서 농특세의 위치를 고려할 때, 세입 측면에서는 목적세이지만 운용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재원 성격이 강함
 - 농특세사업의 계획수립-예산배정-세수확보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임

“
 농특세 사업의
 ‘농어촌 복지증진’
 집중으로 목적세로서
 역할 강화,
 농특세 예산과
 세수(稅收) 간
 일치성 확보 위해
 관계부처 간
 조정기능 강화 필요
 ”



2014년

-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(박준기, 김미복)
- 제89호 한·EU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(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, 정민국)
-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(송미령, 성주인, 김광선, 조미형)
-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(이요한, 석현덕, 구자춘)
- 제86호 한·칠레 FTA 10년, 농업분야 이행평가(문한필, 정호연, 김수지, 김영준)
- 제85호 한·미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정민국, 문한필, 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)
-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(허덕, 한봉희, 김형진, 이형우, 김진년)
-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(황의식, 이계임, 송미령)

2013년

- 제82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(정정길)
-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(정호근, 권오복, 석현덕)
-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(석현덕, 문지민, 박소희)
-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(서대석, 노호영, 이금호, 이형용, 한은수)
-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(허덕, 이형우, 김원태, 김형진, 한봉희)
-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(이요한, 석현덕, 한기주)
-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(박동규, 승준호)
-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(석현덕, 박소희)
-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송주호)
-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(허덕, 우병준, 이형우, 김태우)
-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(석현덕, 안선진)
-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(이용선, 우병준, 서대석, 승준호)
-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(김태곤, 허주녕, 양찬영)
-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(정호근, 석현덕)
-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(권태진, 임수경)
-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(박시현)
-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·군별 농업경쟁력 평가(이병훈, 윤종열, 윤영석)
-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(석현덕, 안선진)
- 제62호 한·EU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문한필, 이현근, 남기천)
-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(성명환, 박지연, 정원희)
- 제60호 창조경제, 농업·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(박준기)
-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(성명환, 윤재웅)



-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(박기환)
-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(정원호, 최경환)
-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(송미령)
-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(정호근, 박소희, 석현덕)
- 제53호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(김용렬, 정학균, 민자혜)
-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(김성우, 노호영)
- 제51호 한·미 FTA 발효 1년, 농업부문 영향 분석(정민국, 문한필)
-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(박기환)
-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(김연중, 한혜성)
-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(지인배, 허덕, 송우진, 우병준)
-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(김용렬, 박시현)
-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(박현태, 박기환)
-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(정민국)
-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(석현덕, 장철수, 민경택, 정호근)
-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강창용)
-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(김용렬, 성주인)
-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(강창용)
-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(이계임, 이동소)
-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박준기)
- 2012년
- 제38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(정원호)
-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황윤재)
-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(서대석, 이형용, 권희민, 이용선)
-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(송우진, 정민국)
-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(성명환, 한석호, 승준호, 신승희)
- 제32호 도시농부: 도농상생의 가교(김태곤, 허주녕, 김예슬)
-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(김용렬, 윤유식)
-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최병옥, 승준호)
-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(한재환, 신유선, 이미숙, 윤종민, 이용선)
-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(이병훈, 윤영석)
-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·중 FTA에 대한 시사점(최세균, 전형진, 정대희)
-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(김동원, 이병훈, 김광선, 박혜진)
-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(정호근, 조국훈)



-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(국승용)
-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(정민국, 우병준, 김원태)
-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(권태진, 남민지)
-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(성주인, 채종현)
-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(박대식, 마상진)
-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(문한필, 전형진)
-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17호 한·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(어명근)
-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(김성우, 한은수, 김명환)
-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(김광선, 채종현, 윤병석)
-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13호 최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(김정섭, 성주인, 마상진)
-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(최경환)
-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(황의식, 김동훈)
-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(채광석)
-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(최세균, 정대회)
-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(박대식, 마상진)
-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최지현, 국승용, 박시현)
- 2011년
- 제 5호 2011년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 4호 한·미 FTA,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(최세균)
-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
-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- (문한필, 김경필, 어명근, 전형진)
-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(한석호, 승준호)
-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(이용선, 서대석)



memo

KREI 농정포커스 제90호

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

등 록 제6-0007호(1979. 5. 25)
인 쇄 2014. 8. 4.
발 행 2014. 8. 4.
발 행 인 최세균
편집위원 박성재, 김병률, 박준기, 성주인, 한석호
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130-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-3
02-3299-4000 <http://www.krei.re.kr>
인 쇄 (사)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
02-2269-5523~4 dec5523@hanmail.net

ISBN: 978-89-6013-611-3 93520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

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.krei.re.kr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-3 우 | 130-710
Tel 02-3299-4000 Fax 02-965-6950